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상대학과의 학점교류와 군복무 중 가상대학의 학점취득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 학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다음의 수업을 말한다.

1. 사이버강의 : 전체수업을 동영상 강의콘텐츠로 운영하는 수업

2. 하이브리드 수업 : 전체수업 중 50%이하를 동영상 강의콘텐츠로 운영하는 수업.

단,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원격교육지원센터(이러닝지원센터)를 통해 개발 운영된 블렌디드 수업(동영상 강의콘텐츠가 전체수업 중 50%초과 100%미만으로 구성)도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본다.

②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실시간 화상수업(Zoom수업)은 원격수업의 범주가 아니며, 대면수업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제4조(부서 업무분장)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학사팀 : 원격수업(전공)의 개설관리, 강의평가 시행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

2. 기초교양교육팀 : 원격수업(교양)의 개설관리

3. 원격교육지원센터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콘텐츠 질 관리, 교수자 원격수업 역량 제고, 강의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대학정보공시 및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제 2 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제5조(심의·의결기구) ① 원격수업과 관련된 학사운영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더:함교양대학부학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기초교양교육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사항
 - 2. 원격수업 질 관리에 대한 사항
 - 3.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제7조(사이버강의 교과목 선정) ①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매 학기 개강 4개월 전에 신규 및 개편 콘텐츠 교과목을 공모한다.

② 사이버강의는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에 기 편성되어 1학기 이상 대면수업으로 운영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이버강의의 개발 및 운영을 희망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이버강의 개발 신청서(전공교과는 학부(과)장 및 전공교육과정위원장, 교양교과는 학부장 및 교양교육과정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제출한다.)
- 2. 강의계획서
- 3. 선정평가용 2주차 이내의 콘텐츠
- 4. 그 밖의 특기사항

④ 센터장은 사이버강의 개발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이버강의 강자 적합성, 개발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강의계획서의 구체성, 담당교수의 원격수업 역량 등을 평가한다. 이때 심사위원회에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센터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⑥ 교육과정위원회는 사이버강의 개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대상 교과목을 선정한다.

⑦ (삭제 2023. 3. 1.)

⑧ (삭제 2023. 3. 1.)

제7조의 2(하이브리드 교과목 선정) ① 하이브리드 수업은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에 기편성되어 1학기 이상 대면수업으로 운영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하이브리드 수업 운영을 희망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교과목 개설 전 하이브리드 수업 운영 신청서를 교과목 개설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개설부서에서는 하이브리드 운영 신청 내역을 해당 교육부서 교육과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하이브리드 수업을 최종 선정한다.

- 전공 : 전공교육과정위원회
- 교양 : 교양교육과정위원회
- 자유선택 : 융합교육과정위원회

[본조신설 2023. 3. 1.]

제8조(과목개설) ① 제7조, 제7조의 2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과목은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교수 임의로 개설할 수 없다.(개정 2023. 3. 1.)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으로 한정하며, 개설자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사와 비전임교원도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은 다음 각 호 비율 이내로 각 학년도 학기별 수업운영 방침에 따라 개설한다. 단, 계절학기,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운영, 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 2024. 3. 1)

1. 사이버강의 : 학기별 총 개설교과목의 3% 이내
2. 하이브리드 수업
 - 전공교과 : 학기별 총 개설교과목의 30% 이내
 - 교양교과 : 학기별 총 개설교과목의 60% 이내

④ 전임교원 1인당 원격수업방법은 학기당 전체 시수중 1/3 이내로 제한하며, 후보강시 활용되는 원격수업방법을 포함하여 총 1/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이버강의, 전체교과를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운영하는 특정 교양영역 강좌, 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설하는 원격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

제9조(과목운영) ①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이하 LMS)을 통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의 특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2주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강 전 LMS에 탑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강 후에는 수업예정일 2주전까지 해당 차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개강 첫째 주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의 분반 및 폐강 기준은 본 대학교 학칙 등과 학기별 수업운영지침을 따른다.

⑤ 원격수업의 학습효과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강인원이 100명 초과인 수업에 한하여 수업지원조교를 둘 수 있다.

⑥ 원격수업 운영 선정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동영상강의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

1.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 대면 및 원격수업을 포함하여 1시수 당 15차시로 구성한다.
2. 동영상강의콘텐츠의 분량은 1시수 기준으로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시간 25분 이상, 1차시 총 학습시간은 재생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으로 한다.
3. 25분 이상의 콘텐츠는 담당교수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만 인정하며, K-MOOC, 유튜브 등의 외부 콘텐츠는 담당교수의 직접 제작유무를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 보조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다.
4. 콘텐츠는 수업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학습개요, 학습내용 및 학습평가 등의 구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콘텐츠는 제작도구, 동영상, 화면캡처,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제작 가능하다.

제10조(원격수업 LMS) 원격수업 LMS는 학생의 출결사항, 이용시간 기록, 수강자 개별 접속 기록, 수업 동영상 재생 등 수업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장 원격수업 수강 및 이수

제11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 등과 학기별 수업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2조(수강정원) 담당교수와 수강생 간의 상호작용과 수업의 질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은 과목당 수강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출결관리 및 출석인정) ① 학습기간은 본 대학교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 정정이나 계절학기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담당교수는 LMS에서 출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매 차시 종료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결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출석은 차시 당 1주 이내에 학습진도율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70%이상 90%미만은 지각으로 한다.

⑤ 조기취업자를 비롯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각이나 결석의 처리는 본 대학교 학칙 등을 따른다.

제14조(학점인정)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원격수업 질 관리

제15조(관리 및 지원) ① 센터장은 질 높은 원격수업의 개발, 제작 및 운영과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격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게시판 활동 등을 통한 수강생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2. 토론, 조별활동, 퀴즈, 수시시험, 과제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수강생의 학습의욕 고취와 학업평가
3. 학습내용과 관련한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제16조(원격수업의 운영기간) ① 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개발된 원격수업의 운영기간은 제작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간이 경과된 원격수업 콘텐츠의 경우 위원회 심의에 따라 다시 제작해야한다.

제17조(원격수업 질 관리) ① 원격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원격수업 질관리를 위한 센터의 원격교육 점검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시 점검한다.

③ 센터장은 학기 중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과 운영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위원회

의 심의를 요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지원센터는 대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⑤ 대학은 원격수업 질 관리와 교원 역량향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18조(시험) ① 엄중한 학업평가를 위해 원격수업의 시험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중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학기 당 2회(중간, 기말) 이상을 실시한다.

②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 기준 점수(80점) 미달인 교원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수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저작권) ① 본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②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담당교수에게 있다.

제 6 장 시수인정 및 강사료

제21조(책임시수인정 및 강사료) 원격수업의 책임시수인정 및 강사료는 전임교원 책임 수업시수 및 교원의 강사료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지침) ① 이 규정에 따라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재난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 규정을 일부 적용하거나 따로 정하여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2. 2.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원격수업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